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71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3. 20.(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2.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3.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5.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의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제정이유

성주군의회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포상규정의 주요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상 기준(안 제2조~제9조)
- 나. 포상 절차의 체계화(안 제11조)
- 다.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4조)
- 라. 부당 포상 방지 장치 마련(안 제16조~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 규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성주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주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매월 5만원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의 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과장이 한다.

④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 의회 포상을 받은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성주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등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

2. 의회사무과장(당연직)

3. 전문위원

4. 포상업무 담당 팀장

5. 성주군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④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⑨ 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기념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의회포상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창장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

성명 :

(본문)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 성명

(본문)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상장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

성명 :

(본문)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로패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

직 :

성명 :

(본문)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앞 면)

※ 전산처리 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② 생 년 월 일						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④ 본 적					미 기 재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직급, 계급)			⑩ 근무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용)					⑫ 공적 분야코드			-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①9 년 월 일	②0 이 력	②1 년 월 일	②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표창별로 기록)			
②3 년 월 일	②4 이 력	②5 년 월 일	②6 이 력
②7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공 적 조 서(을)

공 적 사 항

붙임**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의자 : 김종식,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명문화 (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사업
-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
대화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5. (생략)</p>	<p>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사업</u></p> <p><u>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붙임**관련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부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의자 : 여노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1. 개정이유

기존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여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여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와 상이한 조례 별표를 삭제하여 상위 규정과의 운영 기준을 통일(안 제 3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로, “한다)를”을 “한다)와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은”을 “공무원의 여비는”으로, “별표 1 제1호라목을”을 “별표 1의 각 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호 중 ““의장””을 ““성주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 및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수행비서 및 운전원, 사진·영상 촬영 담당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 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 한다.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 급 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p>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 ---- <u>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u> ----- - <u>한다)와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u> ----- -.</p> <p><u><삭 제></u></p> <p><u><삭 제></u></p>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공무원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 8. (생략)

의 여비는 -----
----- 별표 1의 각 호를 -----
-----.

<삭제>

제6조(준용 규정) -----

-----.

1. (현행과 같음)
2. -----

“성주군의회 의장”-----
-----.

3. ~ 8.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 근거
-----------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의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본인의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제12항)

3. 조례안 : 붙임

4.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2항의 특별휴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u><신 설></u>	제13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 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u>

붙임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정책 제안제도를 내실있는 심사 체계로 개편하여 군민 참여가 실질적인 긍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상금 상향조정 등을 통해 참여율 제고 및 합리적 시상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주군정조정위원회 대행 (삭제)
- 위원회 심사사항 (신설)
- 위원회 구성 : 인원, 위촉, 임명, 임기, 성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회 운영 : 비상설 구성 조항, 개의 및 출석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회 제척,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 부상금 규모 확대 및 상한액 설정
- 부상등급 명칭 변경 및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제안 규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2020(2026.02.11.)]
-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9186(2026.02.11.)]
- 마.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2026. 2. 12. ~ 2026. 3. 4.)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2.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위

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제안 또는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⑪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⑫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⑭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금상·은상·동상·장려상”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금상”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은상·동상·장려상”을 “최우수상·우수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 상 : 300만원 이하
2. 최우수 : 200만원 이하
3. 우 수 : 100만원 이하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성주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③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u> 2. <u>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u> 3.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제10조의2(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u></p> <p>③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u>

2.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제안 또는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⑪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⑫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장려상 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
 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
 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
 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제안자의 경우에
 는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
 전을 부여한다.

1. 금상 : 특별 승급
2. 은상·동상·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
 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⑭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
 ----- 대상·최우수상·우수상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상 특전) -----

 ----- . -----

 -----.

1. 대상 -----
2. 최우수상·우수상 -----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 1. 금 상 : 100만원
- 2. 은 상 : 70만원
- 3. 동 상 : 50만원
- 4. 장려상 : 30만원

② (생 략)

<신 설>

-----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1. 대 상 : 300만원 이하
- 2. 최우수 : 200만원 이하
- 3. 우 수 : 100만원 이하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취

◆ 국민제안 규정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 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미래전략실 미래전략팀장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제2대 노조 출범기념 원포인트 협약체결에 따라 매년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일 특별휴가 부여(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4546(2025.12.12.)]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61439(2025.12.12.)]
- 마.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2026. 1. 15. ~ 2026. 2. 3.)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⑰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7항의 특별휴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특별휴가) ①~⑩(생략) <u><신설></u>	제23조(특별휴가) ①~⑩(현행과 같음) ⑪ <u>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u>

관련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총무팀장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3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중보건역사의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부 보건지소를 '진료·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보건진료소'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 전환에 따른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별표1]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성주군 금수강산지소	금수강산면 일원	금수강산면 보건진료소	광산,2,3리, 명천,2리, 어은,1,2리, 후평,1,2리, 대가면 도남,1,2리
성주군 벽진지소	벽진면 일원	벽진면 보건진료소	가암,1,2리, 매수,1,2리, 봉계,1,2,3리, 운정,1, 2리, 수촌,1,2,3,4리, 자산,1,2리, 외기,1리
금수강산면 무학보건진료소	후평,1,2리,봉두,1,2리, 무학,1,2리,영천리	-	봉두리, 무학,1,2리, 영천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1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2839(2026.03.06.)호]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13261(2026.03.06.)호]
- 마. 입법예고 : 제출 의견 없음(2026. 3. 5.~ 3. 9.)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주군 보 건 소	성주군 성주읍 성박숲길 12	성주군 일원
” 선남지소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66	선남면 일원
” 용암지소	성주군 용암면 상성로 14	용암면 일원
” 수륜지소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9-4	수륜면 일원
” 가천지소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	가천면 일원
” 대가지소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58	대가면 일원
” 초전지소	성주군 초전면 대고로 48	초전면 일원
” 월항지소	성주군 월항면 선월로 474	월항면 일원
선 남 면 도흥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276-10	도흥1,2,3리, 도성리, 용신1,2,3리, 소학1,2리
선 남 면 문방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문방3길 23-5	문방1,2,3리, 오도리
선 남 면 명포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본성로 499	명포1,2리, 장학리, 유서1,2리
용 암 면 마월보건진료소	성주군 용암면 마월1길 20	마월1,2리, 중거리, 계상리, 대봉1,2리
수 륜 면 남은보건진료소	성주군 수륜면 남작로 106	남은1,2리, 보월1,2리,작은리
금 수 강 산 면 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902	광산1,2,3리, 명천1,2리, 어은1,2리, 후평1,2리, 대가면 도남1,2리
금 수 강 산 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무학3길 24	봉두리, 무학1,2리, 영천리
대 가 면 용흥보건진료소	성주군 대가면 용흥3길 2	용흥1,2,3리, 흥산1,2리,옥성2리
벽 진 면 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1길 7	가암1,2리, 매수1,2리, 봉계 1,2,3리, 운정1,2리, 수촌 1,2,3,4리, 자산1,2리, 외기 1리
벽 진 면 봉학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봉학1길 9-5	외기2,3리, 봉학1,2,3,4리, 용암1,2리
초 전 면 소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56	소성리, 월곡1,2리, 용봉1,2리
초 전 면 용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용성길 52-8	용성1,2,3리, 문덕2리,칠선1리
월 항 면 장산보건진료소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태실로 63	장산1,2리,수죽1,2리, 지방리,인촌1,2리,어산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6조 관련)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생략			생략	
” 금수강산지 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902	금수강산면 일원	금수강산면 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902	광산1,2,3리, 명천1,2리, 어은1,2리, 후평1,2리, 대가면 도남1,2리
금수강산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무학3길 24	후평1,2리, 봉두1,2리, 무학1,2리, 영천리	금수강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무학3길 24	봉두리,무학1,2리, 영천리
	생략			생략	
” 벽진지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1길 7	벽진면 일원	벽진면 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1길 7	가암1,2리, 매수1,2리, 봉계1,2,3리, 운정1,2리, 수촌1,2,3,4리, 자산1,2리, 외기1리
	생략			생략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행정팀장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3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신축)

1) 목적 및 용도

- 주민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일상 속 체육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

2) 위 치

-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별고을종합체육시설 부지내)

3) 사업기간

- 2025. 3월 ~ 2028. 6월

4) 소요예산

- 3,500백만원(건축비 등/ 국비 28.5%, 군비 71.5% / 일반회계)

5) 사업규모

- <건물신축> 연면적 700㎡ (지상 1층)

6) 사업내용

- 소규모 체육관(탁구, 배드민턴 등), 사무실, 화장실 등

7)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 백만원)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재산종류	비고
1	건물 (신축)	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	700	3,500	운동시설	행정재산 (체육시설 사업소)	군유지

※ 건물 신축인 경우 기준가격을 건물의 건축비로 함

8) 계약방법

- <건물 신축> 공개경쟁입찰

9)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03.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1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03.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기본 및 실시설계
- 2027. 01. : 공사 착공
- 2028. 06. : 공사 준공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 수 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6년도 정기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부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 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26년도 정기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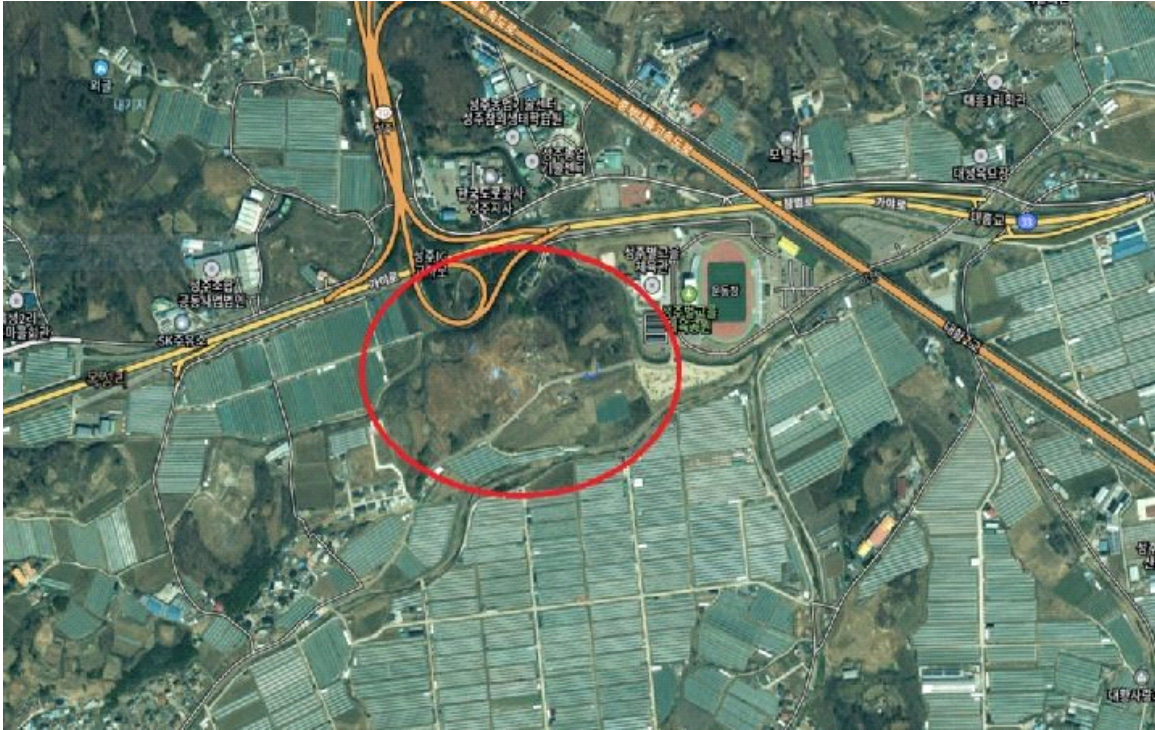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취득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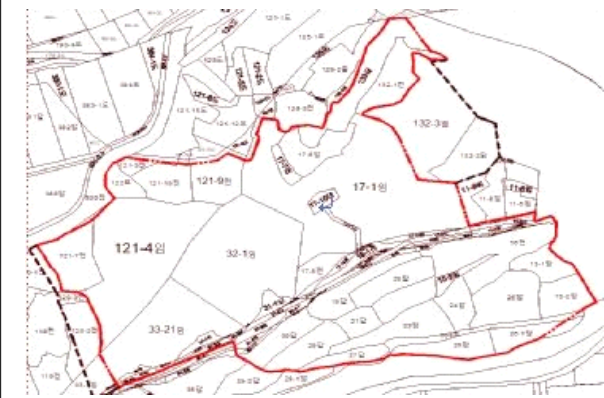
위치도(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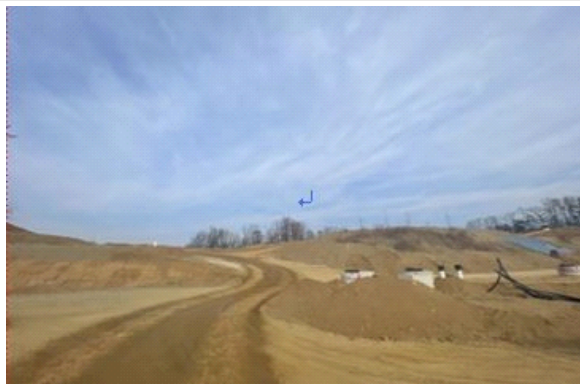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계획관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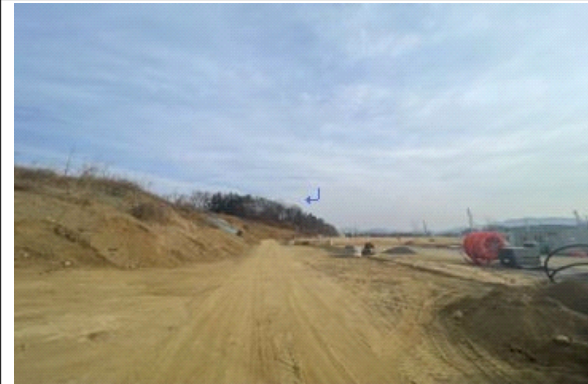
지적도(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



현장사진 1(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



현장사진 2(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3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지원 사항(안 제3조)
-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다. 계절근로자 업무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 라.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지도·점검 및 우수농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10조)
- 바. 고용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첨
-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1596(2026.01.08.)호]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322(2026.01.07.)호,]
- 마. 입법예고 : 26.02.19.~26.03.10.[농촌인력지원단-290(2026.02.19.)호]
- 바. 비용추계서 : 별첨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내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하여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자”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계절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등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이탈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제 구축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

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및 외국인 등록비용
3. 외국인 등록을 위한 마약검사 비용
4.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2.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농가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도·점검 과정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고용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우수농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가에 대해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군에서 실시하는 근로조건, 인권보호,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군수가 정하는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농어업·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
3.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4.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
5.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
6.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
7.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8.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9.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지원
10.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
11.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참외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외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참외 자조금 조성사업
 3. 지역별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
 4. 참외관련 정보제공 사업
 5. 참외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6. 기타 참외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②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10조 제1항 각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이 수반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818,584천원(군비 818,584)

가. 계절근로자사업 운영비 : 818,584천원

- 전담인력(기간제) 인건비 : 195,264천원
- 출입국 인솔비 : 247,500천원
- 외국인등록 및 마약검사 수수료 : 195,000천원
- 기타 운영비 : 180,82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계절근로자사업	818,584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418,584
	소계(b)	818,584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418,584
□ 총 비용(a-b)		-818,584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418,584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군비		818,584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418,584
합계		818,584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418,584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농촌인력지원단 농촌인력1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기 초	비고
계		818,58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195,264	24,408천원 * 8명 = 195,264천원	
	출입국 인솔비	247,500	1,100천원 * 75대 * 3회 = 247,500천원	
	외국인등록, 마약검사 수수료	195,000	75천원 * 2,600명 = 195,000천원	
	기타비	180,820	계절근로자 상해치료비 :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홍보물 : 30천원 * 500부 * 6회 = 90,000천원 국외여비 : 1,000천원 * 2명 * 10회 = 20,000천원 외빈초청경비 : 300천원*5명*3일*3회 = 13,500천원 차량 임차 및 물품구입비 등 : 47,320천원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의회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포상규정의 주요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상 기준(안 제2조~제9조)
- 나. 포상 절차의 체계화(안 제11조)
- 다.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4조)
- 라. 부당 포상 방지 장치 마련(안 제16조~제1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회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간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을 자치법규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이중 포상 금지, 포상 취소 및 환수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포상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회 포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명문화 (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요금 지원 및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존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여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여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와 상이한 조례 별표를 삭제하여 상위 규정과의 운영 기준을 통일(안 제 3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여비 지급 규정 중 그 대상,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 등이 일부 불명확하게 운영되어 온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상위 규정과의 체계를 일치시켜 규범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여비 집행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본인의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제12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직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조직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정책 제안제도를 내실있는 심사 체계로 개편하여 군민 참여가 실질적인 긍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상금 상향조정 등을 통해 참여율 제고 및 합리적 시상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2제1항 ~ 제10조2제9항)
- 나. 제안심사위원회 제척,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2제10항)
-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4항 ~ 제12항)
- 라. 부상 등급 명칭 변경 및 삭제(안 제16조)
- 마. 부상금 규모 확대 및 상한액 설정(안 제8조제3항)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심사체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상금 규모를 현실화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제안제도의 공정성·전문성 및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제2대 노조출범기념 원포인트 협약체결에 따라 매년 1일의 생일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일 특별휴가 부여(안 제23조제17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직원 근무 만족도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보건역사의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부 보건지소를 ‘진료·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보건진료소’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 전환에 따른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별표 1)

개정 전		개정 후	
명 칭	관할구역	명 칭	관할구역
성주군 금수강산지소	금수강산면 일원	금수강산면 보건진료소	광산1,2,3리, 명천1,2리, 어은1,2리, 후평1,2리, 대가면 도남1,2리
성주군 벽진지소	벽진면 일원	벽진면 보건진료소	가암1,2리, 매수1,2리, 봉계1,2,3리, 운정1,2리, 수촌 1, 2, 3, 4 리, 자산1,2리, 외기1리
금수강산면 무학보건진료소	후평1,2리, 봉두1,2리, 무학1,2리, 영천리	-	봉두리, 무학1,2리, 영천리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 감소 및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1차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내용

가.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신축)

1) 목적 및 용도

- 주민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일상 속 체육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

2) 위 치

-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별고을종합체육시설 부지내)

3) 사업기간

- 2025. 3월 ~ 2028. 6월

4) 소요예산

- 3,500백만원(건축비 등/ 국비 28.5%, 군비 71.5% / 일반회계)

5) 사업규모

- <건물신축> 연면적 700m² (지상 1층)

6) 사업내용

- 소규모 체육관(탁구, 배드민턴 등), 사무실, 화장실 등

7)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 백만원)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재산종류	비고
1	건물 (신축)	대가면 옥성리 32-1 일원	700	3,500	운동시설	행정재산 (체육시설 사업소)	군유지

※ 건물 신축인 경우 기준가격을 건물의 건축비로 함

8) 계약방법

- <건물 신축> 공개경쟁입찰

9)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03.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1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03.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기본 및 실시설계
- 2027. 01. : 공사 착공
- 2028. 06.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대가면 옥성리 32-1번지 일원 별고을종합체육시설 부지 내에 연면적 700m² 규모의 소규모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500백만원(국비 28.5%, 군비 71.5%)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존 종합체육시설과 연계한 시설 활용도 제고, 소규모 종목(탁구·배드민턴 등) 중심의 맞춤형 체육공간 확보, 지역 동호회 및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지원 사항(안 제3조)
-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계절근로자 업무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지도·점검 및 우수 농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바. 고용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 분야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운영계획의 수립, 사전이행사항,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근거와,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지도·점검, 우수농가 지정 및 교육 의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도모한 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농어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